

2021년도 제1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6. 1.(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2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84건(안전번호 제2021-58958호~59902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58958호~58959호는 웹하드에 만화 불법 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08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현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2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 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08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58958호~58959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

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58958호~5895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58960호~59902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을 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영화)분노의 질주: 더 세븐 (2015)'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59230호 '(영화)분노의 질주: 더 세븐 (2015)'은 2015. 4. 1. 개봉한 해외 영화로 ♀♀♀ 블로그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블로그에는 많은 양의 영화가 시리즈별로 각 전편 게시되어 있으며, 금일 안전 중에는 총 29건이 포함되어 있음. 이 블로그는 민원인이 1건의 게시물을 먼저 신고하였으며,

민원 취지에 따라 보호원이 사후조치로서 다른 불법복제물들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음. 2021. 5. 31. 1분과에서 먼저 총 34건을 심의하였으며, 금일 2분과에 총 29건을 심의요청하였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58960호~5990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C, E 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55815호~5649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1-58958호~58959호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58960호~5990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6. 8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